

2020년도

도시국 종합감사 결과 보고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6. 10. ~ 6. 23.(10일간)
- 감사범위 : 2018. 1. 1. ~ 2020. 5. 31. 업무처리 전반

□ 감사결과 : 지적건수 20건

행정상	시정 6건 주의 13건 개선 1건	재정상	부과 1건 회수 2건	신분상	
-----	--------------------------	-----	----------------	-----	--

감 사 관
(감 사 팀)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자체감사는 자율통제를 위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본청과 하급기관,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을 모두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율통제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읍·면·동·센터 등의 하급기관 위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고, 본청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 미실시로 시의 대규모 사업과 업무추진 방향 설정 과정의 오류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시정하기 어려운 등 본청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인구 70만 대도시로의 성장과 시정기능 확대에 따라 내부통제 필요성이 커지고 정책감사, 예방감사로의 감사기능 확대·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시의 주요 정책업무들을 다루는 본청 실·국을 대상으로 시 정책사업 추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점점을 실시하게 되었다.

도시국은 2017년 7월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 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게 되어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문제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예방감사를 통해 업무역량 강화 및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업무처리 관련 법률 및 지침 준수 여부, 주요사업 추진의 성과분석 및 타당성 검토, 예산의 집행, 시설공사·물품·용역 계약 관련 회계 규정 준수여부, 인·허가 등 민원 사무 처리의 적정 여부, 부담금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 여부, 위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및 관리·감독의 적정 여부, 소극행정 분야 및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준수 여부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존 경기도 종합감사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도시국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기존의 감사 결과, 시 의회 논의사항 및 고충민원 발생사항, 시민의견 수렴 등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분석하였으며, 2020. 6. 10.부터 동년 6. 23.까지(10일간) 감사인원 1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상부서 담당자, 담당팀장, 국·과장 질의 답변을 통해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확인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현황

1. 조직 및 인원

도시국은 7과 3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정비·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및 관리,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 정책 수립·이행 및 행정 지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택지개발계획 수립,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정비사업시행인가, 옥외광고물 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 주택과는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추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관련 업무, 임대주택사업자등록 및 임대조건 신고에 관한 업무,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수립·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건축허가 및 협의, 건축위원회 운영,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업무,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 지적통계,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전산자료 이용·승인, 부동산종합 공부 자료 정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업무, 부동산관리과는 부동산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 부동산실명법 운영,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도로명주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국의 2020. 7. 31. 기준 정원은 139명이며, 현원은 135명이다.

[표 1] 교통도로국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9	1	7	35	39	35	22	
현 원	135	1	6	37	39	22	30	

2. 예산 및 주요사업

도시국의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2,419백만원, 특별회계 13,122백만원으로 총 45,541백만원이며,

[표 2] 2020년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총 계	통합기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비 고
총 계	12,802	590	10,866	1,346	
옥외광고발전기금	1,997	590	516	89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805	-	10,350	455	

[표 3] 2020년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총계	45,541	32,419	13,122	
도시정책과	561	514	4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과	107	107		
도시재생과	27,334	27,318	16	도시재정비촉진
주택과	767	767		
건축과	14,035	976	13,05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토지정보과	1,653	1,653		
부동산관리과	1,084	1,084		

2020년도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왕숙지구 조성 사업, 홍유릉 역사공원 조성 사업, 도시계획 구역 관리 등 도시 계획분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17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I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었다.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부과	회수	계	징계	훈계
20	6	13	1	3 (00,000,000)	1 (00,000,000)	2 (0,000,000)			

이에 총 2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개선 등 행정상 조치하고, 업무 부적정 및 소홀 등과 관련하여 0건 0명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 조치하였으며, 3건 00,000,000원의 부과 및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향후 금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임·직원들의 내부적인 개선 노력과 지속적 직무교육, 감사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정·개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자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2. 감사결과 처분계획

□ 처분요구내역 총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원)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부과	회수	계	징계	훈계
20	6	13	1	3 (00,000,000)	1 (00,000,000)	2 (0,000,000)			

□ 처분요구목록 : 총 20건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총 20건		총액 00,000,000원 부과 00,000,000원 회수 0,000,000원	
1	○○○○과 ◇◇◇◇과 ◆◆과 □□과 △△△△과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주의		
2	○○○○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리 소홀	시정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3	○○○○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개선		
4	○○○○과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부과 부적정	주의		
5	◇◇◇◇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0,000,000원	
6	◇◇◇◇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록 부적정	주의		
7	◇◇◇◇과	위수탁사업 대행사업 집행·관리 소홀	주의		
8	◇◇◇◇과	용역사업 관리 소홀	주의		
9	◇◇◇◇과 ▽▽▽▽▽▽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본임무 및 수탁자의 의무이행 소홀	주의		
10	◆◆과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11	□□과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2	□□과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부적정	주의		
13	□□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 확인 소홀	주의		
14	□□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예치 소홀	주의		
15	□□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부적정	주의		
16	□□과	민원조사 사항 조치 소홀	시정		
17	□□과 ▼▼▼▼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상감사 미이행	주의		
18	△△△△△과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시정	부과 00,000,000원	

일련 번호	담당부서	제 목	조 치 구 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19	○○○○과 ◇◇◇◇과 ◆◆과 ●●●●과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미이행	시정		
20	도시국 0개과	출장절차 미준수 및 여비 과다수령	시정	회수 0,000,000원	

3. 주요 지적 사항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NO. 1
----------	--------------------------	--------------

- ○○○○과, ◇◇◇◇과, ◆◆과, □□과 및 △△△△과에서는 수임부서의 위임사무 안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교육·간담회·회의 개최, 법령개정 및 관원질의 사항 등을 공유하는 등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임부서의 지휘·감독이 수임부서 간의 위임사무 처리의 통일성 확보에 부족하고, 위임부서는 수임부서가 처한 상황 등의 검토 없이 지속적으로 사무위임을 검토하고 있다.
- 따라서, 위임부서에서는 수임부서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임부서의 의견(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교육·회의·간담회(온·오프라인 병행)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문서화하여 수임부서와 공유하며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임부서와 함께 업무매뉴얼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조사,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본임무 및 수탁자의 인무이행 소홀	NO. 9
----------	--------------------------------------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한다고

정하고 있고, 「남양주시 ㉔㉔㉔ 도시재생 ㉔㉔사업 위·수탁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설계도서 검토, 공사발주 및 관련 계약 관리 등을 업무로 하며, 수탁자가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지연, 사고, 시설물하자 등을 발생시킨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에서는 남양주 ㉔㉔㉔ 역사공원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검사 시 설계도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을 완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에서는 설계도서에 대한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 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하여 00.00%를 감액조정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설계도서 검토 업무 소홀 및 위·수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개별 사업의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부적정	NO. 12
----------	-----------------------------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되고,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㉔㉔동 ****-*번지 상 건축허가 등 0건의 신청내용상 피난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계하고,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이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를 두고 계획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설계 내용의 수정 등 적정 조치없이 허가처리 한 사실이 있다.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NO. 18
---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인가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사업임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고,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 준공 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60일 이내에 부담금 예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적인 고지전 심사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여 개발사업 준공 이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에서는 ▮▮동 ****-**번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000일이 경과하여 00,000,000원의 개발부담금을 예정 통지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결정·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읍 ▮▮리 *번지 일원 연접한 토지에서 준공처리 된 0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상통보 및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등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검토를 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결정·부과를 누락하는 등 연접사업으로 추진된 각 0건의 사업에 대하여 연접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읍 ○○리 ***-* 등 총 00건에 대하여 0일에서 최장 000일까지 초과하여 고지하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고지를 소홀히 하였고, ○○읍 ○○리 **-* 등 총 000건에 대해 예정통지 기한일로부터 짧게는 0일에서 길게는 000일을 초과하여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하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개발부담금을 미부과한 ▮▮동 ****-**에 대하여 00,000,000원을 부과 처리하고, ▮▮읍 ○○리의 0건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도록 “시정” 조치

5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미이행	NO. 19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착수(시행)·변경 및 완료한 때에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선의의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토지대장상에 “도시개발시행사업지역” 임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새롭게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의

사전 준비(예정좌표도 등) 등을 추진하여 토지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토지개발사업 관리업무 부서인 ●●●●와 사업주관 부서인 ○○○○과 · ◇◇◇◇과 · ◆◆과에서는 이미 사업이 착수(시행)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공부(토지대장)상의 정리절차 및 경계와 면적을 새로이 정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절차의 차질 등 토지개발사업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상의 정리절차 및 경계와 면적을 새로이 정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

4. 기타 지적 사항

감사결과 기타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리 소홀 (No.2)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0개소에 대하여 인가기한(준공예정일)이 만료된 후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인가처리 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0개소에 대하여는 실시계획(변경)인가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근린공원 주차장 및 경관시설 확충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포함된 인가기한 00일 지난 뒤 공사완료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 관련 부서별 협의 결과 보완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완료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준공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변경)인가 기간이 도과된 0개소에 대한 연장안내 및 ●●근린공원 주차장 및 경관시설 확충사업 준공처리 등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
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No.3)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서는 위원의 해촉, 회의록 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 사항이 상위법과 조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개선 필요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 하도록 “개선” 조치
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부과 부적정 (No.4)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방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신청인에게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에 산지복구비가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재산정하여 예치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산지전용 의제 협의내용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개발행위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를 중복 계 상하여 0,000,000천원을 중복 부과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No.5)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과에서는 『■■■■■ ■■■■■■ 게시 대 제작 및 설치』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산업안전관리비 금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0,00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5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록 부적정 (No.6)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르면 관계법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 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이상인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함에도, ◇◇◇◇과에서는 『■■■■■ ■■■■■■ 마을 문화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토량 00,000㎡에 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6	위·수탁사업 대행사업 집행·관리 소홀	(No.7)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 도시재생 ◻◻◻◻사업 위·수탁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사업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지급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계정에 사업비를 지급 하여야 함에도, 위탁자인 ◇◇◇◇과에서는 수탁자인 ▽▽▽▽ ▽▽▽의 위·수탁 대행사업비 교부금 신청(1차~3차)에 대하여 지급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내부검토 없이, 교부결정 하였으며, 대행사업비 1차 교부 시 회계처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별도 계정이 아닌 수탁자의 일반 계정에 지급하여 위·수탁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7	용역사업 관리 소홀	(No.8)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서는 “**** 남양주시 ◻◻◻◻◻◻◻◻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당초 감독공무원의 인사발령 이후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게 하였고, 감독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공무원이 사업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익월 5일까지 제출받아야 하나,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월간공정보고서가 0회에 이르는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8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No.10)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에서는 2020년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2018년도 자문실적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보수지원사업 지원 단지 중 ◻◻◻◻◻◻ 아파트가 2018년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자문결과를 제출하여 20점의 가점을 인정받아 최종 보조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되었고, • 2019년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된 ◇◇◇◇과 ◻◻아파트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정산검사 시 현황과 같이 설계서상 법정경비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9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No.11)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등 이전-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외의 경비로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 사업 종료 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예와 같이 정산하는 공기관 교부대상 세출예산임에도, □□과에서는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 집행하여야 할 '▣▣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다세대, 연립주택)'사업의 사무관리비(조달수수료 등의 부대경비)를 ▽▽▽▽▽▽▽에게 위탁사업비와 같이 일괄적으로 교부하여 집행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10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 확인 소홀	(No.13)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 ▣▣동 ***-*번지 상 건축허가 건에 대한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 신고를 처리하면서, 토지주가 아닌 건축주 주식회사◆◆◆◆◆가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득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 주식회사 ●●●●●의 협약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보완 등의 별도 조치없이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면 ▣▣▣리 ***-** 외 0필지상 건축허가 건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또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허가처리 하였어야 하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신고서 등이 미제출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허가처리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11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예치 소홀	(No.14)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양주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착공신고 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에서는 ▣▣동 ****-*번지 및 ▣▣동 **번지 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에치금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착공신고를 수리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1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부적정 (No.15)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을 미준수 하였으며, 정산 시 사업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내역서를 미제출 하였는데도 별도 보완 요청없이 정산을 완료하였고, ▽▽▽▽▽▽에서 2019년도 연간보수 계획 및 변경계획(0회)을 미수립(문서 미통보)하였는데도 현재 까지 별도 조치를 않는 등 해당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13	민원조사 사항 조치 소홀 (No.16)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에서는 감사관-8572(2019.8.21.)호로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에 있어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이 없도록 □□과에서 발코니에 대한 일관된 처리기준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건축 인허가담당자의 교육 등 합리적으로 법령을 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받았음에도, 문서 접수 후 현재까지 발코니에 대한 일관된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민원조사 사항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에 대한 일관된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조사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
14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상감사 미이행 (No.17)
위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관리 주관부서인 □□과와 사업부서인 ▼▼▼▼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 지원사업 0건을 추진하면서 사업 계획 및 관련 규정 검토 소홀로 인하여 민간자본보조금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15	출장절차 미준수 및 여비 과다수령	(No.20)
위법 부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시국 0개과에서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000회에 걸쳐 소속 직원이 4시간 이상 출장결재를 득하고 실제로는 4시간미만 출장하였으나, 사후에 출장변경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채 총 0,000,000원의 출장여비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과다하게 수령하게 한 사실 	
처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장여비 과다수령액 0,000,00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